

“변화를 선도하는 강남,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”

등록번호	민원여권과-28814
등록일자	2015.10.2.
결재일자	2015.10.2.
공개구분	부분공개

주무관	민원행정팀장	민원여권과장	행정국장		
이호선	代이미화	이인호	전결 10/02 이창훈		
협조자					

★ 무인민원발급기 교체에 따른

## 무인민원발급기 불용결정 및 매각 계획

불용품의 품목

물 품 명	용 도	수 량	취득년도	비고
무인민원발급기 본체	민원서류 발급	2	2004. 11	강남역, 삼성역
발급기용 PC(본체 부착)	“	2	2004. 11	
복합인증기(본체 부착)	“	2	2004. 11	

매각처리계획

- 매각방법 : 수의계약
- 매각업체 : 한국타피컴퓨터(주)
- 매각금액 : 총110,000원(1대당 50,000원, 부가세 10%)
- 매각사유 : 관리전환 등 대체 사용 곤란(희망 소요처 없음), 무인민원발급기 전용 부품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

2015. 10. .

**강 남 구**  
(민원여권과)

## 【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】

검토분야	확인 및 적시사항
관련 규정 및 근거	<p>현행 관련 법, 시행령, 조례, 규칙,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?</p> <p>무인민원발급기 구매(교체)계획(민원여권과-25942, 2015.9.9.)</p>
추진 경위	<p>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?</p> <p>·추진경위 : 내구연한 경과로 노후된 무인민원발급기 구매(교체)</p>
예산 사항	<p>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?</p> <p>해당없음</p>
수혜자 및 범위	<p>이 업무(사업)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?</p> <p>·대상 : 일반주민</p>
분야별 검토사항	<p>이 업무(사업)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?</p> <p>① 관련부서 협조 ----- ( ○ )</p> <p>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----- ( )</p> <p>③ 추진상 사전 결림돌 ----- ( )</p> <p>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----- ( )</p> <p>⑤ 시장조사 ----- ( )</p> <p>⑥ 민간부분(시설 등)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----- ( )</p> <p>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----- ( ○ )</p> <p>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----- ( )</p> <p>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----- ( )</p> <p>·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,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</p>
타 기관 사례	<p>타 구 사례를 파악, 비교해 보았습니까?</p> <p>해당사항없음</p>
전문가 자문	<p>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?</p> <p>해당사항 없음</p>

★ 무인민원발급기 교체에 따른

## 무인민원발급기 불용결정 및 매각 계획

내구 연한 경과로 노후된 무인민원발급기 교체에 따라 기존 사용이 불가능한 무인민원발급기를 불용결정하고, 매각절차에 따라 매각처분함으로써 물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.

### I 추진 근거

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3조, 제75조, 제76조
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62조
-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1조, 제72조
-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제48조
- 무인민원발급기 구매(교체) 계획(민원여권과-25942, 2015. 9. 9)

### II 불용품의 불용결정

- 불용품의 품목

물 품 명	용 도	수 량	취득년도	비고
무인민원발급기 본체	민원서류 발급	2	2004. 11	강남역, 삼성역
발급기용 PC(본체 부착)	“	2	2004. 11	
복합인증기(본체 부착)	“	2	2004. 11	

- 불용품의 불용결정

- 불용품의 소요조회
  - 강남구 소속 행정기관, 전국지방자치단체 등 불용품 소요 조회 결과 관

리 전환 희망기관 없음

- 소요 조회 공문대호 : 민원여권과-26155, 민원여권과-26156(2015.9.11.)
- 불용결정 품목 : 무인민원발급기 본체, PC, 복합인증기 각 2대
- 불용결정의 근거 :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1조 제1항 3호
  - 원장비가 사용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원장비가 없어지고 새로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

### III 불용품의 매각계획

- 매각사유

- 내구연한(5년) 경과 및 잦은 고장으로 민원인의 이용이 불편하여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구매
- 관리전환 등 대체 사용 곤란 : 희망 소요처가 없으며, 무인민원발급기 전용 부품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

- 매각처리계획

- 매각 처리기간 : 2015. 10월중
- 매각방법 : 수의계약
- 매각업체 : 한국타피컴퓨터(주)(대표자 : 배창희)
- 판매단가 : 1대당 50,000원(부가세 별도)
- 총판매금액 : 110,000원
- 산출근거 : 50,000원 × 2대 = 100,000원(부가세 10% 10,000원)

### IV 행정 사항

- 불용물품 승인 및 매각 처리 : 재무과